



제428회국회(임시회)
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자살예방센터 수행 업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업무 추가〉

■ 정부 제출(의안번호 제9098호)

2025. 8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전문위원 오 세 일

목 차

I . 개요	1
II . 검토의견	2
1. 자살예방센터 수행 업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업무 추가	2

I. 개요

1. 정부 제출(의안번호 제9098호)

가. 제안경위

- (1) 제 안 자 : 정부
- (2) 제 안 일 : 2025. 3. 19.
- (3) 회 부 일 : 2025. 3. 20.

나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자살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제1항제8호 신설 등).

Ⅱ. 검토의견

1. 자살예방센터 수행 업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업무 추가

□ 개정안은 자살예방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의 하나로서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제1항제8호 신설 등).

현행	개정안
제13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)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	제13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) ①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<u>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</u>	7. <u>자살예방</u> ----- ----- ----- -----
<u><신설></u>	8. <u>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</u>
② ~ ⑤ (생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□ 자살예방센터는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설치·운영의 주체이고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의 업무¹⁾ 등 다양한 자살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, 2024년 12월 기준 전국 255개소가 설치·운영되고 있음.

< 시·도별 자살예방센터 설치현황 >

(‘24년 12월 기준)

지역		자살예방센터 ¹⁾			정신건강복지센터(팀) ²⁾		
		소계	광역	기초	소계	광역	기초
합계	255	55	13	42	200	4	196
서울	26	2	1	1	24	0	24
부산	17	2	1	1	15	0	15
대구	10	1	1	0	9	0	9
인천	12	4	1	3	8	0	8
광주	6	1	1	0	5	0	5
대전	6	1	1	0	5	0	5
울산	6	1	1	0	5	0	5
세종	2	0	0	0	2	1	1
경기	32	32	1	31	0	0	0
강원	19	5	1	4	14	0	14
충북	15	0	0	0	15	1	14
충남	17	3	1	2	14	0	14
전북	15	0	0	0	15	1	14
전남	23	0	0	0	23	1	22
경북	25	1	1	0	24	0	24
경남	21	1	1	0	20	0	20
제주	3	1	1	0	2	0	2

1) 독립형 6개소, 부설형 49개소, 2)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전담팀 또는 전담인력 배치²⁾

1)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

제13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)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자살 관련 상담
2.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
3. 자살시도자 사후관리
4.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
5.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
6.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·훈련
7.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2)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

제13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)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.

□ 개정안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³⁾ 추진의 일환으로 정부가 제출하였으며, 현행법에서 열거되지 않은 자살예방센터의 업무라 하더라도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법률적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서 입법 취지를 찾을 수 있음.

특히 지역 내 자살이 빈발하게 일어나는 장소가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고유한 예방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.

□ 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,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관계의 변동을 가져오거나 혹은 집행기관에게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전 준비 기간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시행일을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<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 >

부처명	개정안에 대한 의견
보건복지부	○자살예방센터는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설치·운영하고,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함.

문 의 처

02)6788-5498

3)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11번 과제임.